

석좌교수 규정

1994. 5. 2 제정

2007. 1. 19 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교육과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학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석좌교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자격) 석좌교수는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고 인격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 학자(본교 전임교원을 포함한다)로 한다. (개정 2005.10.10)

제 3 조 (종류) ①석좌교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. 본교가 초빙한 초빙명예석좌교수 (개정 2007.1.19)

2. 본교가 초빙한 초빙석좌교수

3.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임용된 석좌교수(이하 “교내 석좌교수”라 한다)
(개정 2007.1.19)

②석좌교수는 정부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, 그 경우에는 석좌교수의 명칭 앞에 출연자가 희망하는 명의를 붙일 수 있다.

(개정 2005.10.10)

제 4 조 (임면) ①석좌교수는 해당 학과 교수회의 발의와 소속 대학(원)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면한다. 다만, 총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대학(원)장의 추천 없이 석좌교수를 임면할 수 있다. (개정 2005.10.10)

②석좌교수를 임면할 때에는 석좌교수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(개정 2005.10.10)

③대학(원)장이 석좌교수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대학(원)장의 추천서(서식 제 1 호) (개정 2007.1.19)

2. 이력서(서식 제 2 호)

3. 해당 학문분야 교수 1인의 의견서

제 5 조 (임기 등) ①초빙명예석좌교수 및 초빙석좌교수의 임용기간은 1학기 또는 1년으로 하며 모두 합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개정 2007.1.19)

②교내 석좌교수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(신설 2005.10.10)

③석좌교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70세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까지만 임용할 수 있다. 다만, 초빙명예석좌교수에 대하여는 임용에 따른 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. (단서신설 2007.1.19)

제 6 조 (의무) 석좌교수는 임기중 본교가 지정한 교과목을 담당하고, 필요할 때에는 본교와 협의하여 특강을 한다.

석좌교수 규정

제 7 조 (석좌교수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석좌교수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석좌교수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교무처장 및 교무처부처장과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이 된다. (개정 2005.10.10)

③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(개정 2005.10.10)

제 8 조 (위원회의 회의)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9 조 (위원회의 직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석좌교수의 자격 및 임면에 관한 사항
2. 석좌교수의 임기에 관한 사항
3. 석좌교수제도의 운영을 위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석좌교수의 처우에 관한 사항
5. 석좌교수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6. 기타 석좌교수제도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제 10 조 (행정 및 현금출납사무) ①석좌교수제도 운영에 관한 행정 사무는 교무처 교무과에서 담당하고, 경비의 현금출납사무는 재무처 회계과에서 관리한다. (개정 1997.9.29)

②석좌교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본교의 석좌교수기금과 보조금, 출연석좌 교수제도를 위한 출연금 및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.

제 11 조 (운영세칙) 석좌교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(1994. 5. 2. 제정)

이 규정은 199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7. 9. 29. 개정)

이 규정은 199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1. 4. 6. 개정)

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1. 10. 17. 개정)

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2. 2. 14 개정)

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5. 10. 10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7. 1. 19 개정)

이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석좌교수 규정

(서식 제1호)

석좌교수 추천서

(개정 2007.1.19)

이 름	(한글)	(한문)	(영문)	
국 적		생년월일	년 월 일	성 별
현 소 속			전 화	직 위
현 주 소				전 화
전공분야		석좌교수 종류		
출연하는 정부기관, 단체 또는 개인 이름 (출연에 의한 석좌교수 임용시에 한함)				
출연금액	원	출연일자	년 월 일	
희망 계약기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(개월)		
희망 강의 교과목명 또는 제목				
희망 특강의 제목				

위와 같이 석좌교수 후보자를 추천합니다.

년 월 일

대학(원)장 (인)

첨 부: 1. 학과장 의견서

2. 대학(원)장 의견서

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귀하

석좌교수 규정

(서식 제2호)

이 력 서

1. 이름: 성별:

2. 국적:

3. 생년월일:

4. 주소(주택): 전화:

5. 주소(직장): 전화: Fax:

6. 학력(고교 이상의 학교명, 소재지, 재학년도, 학위)

7. 경력

8. 연구업적

9. 학회활동

위에 기록한 사항들은 틀림이 없습니다.

년 월 일

이 름: (인)

첨 부: 사진(3.5cm x 4.5cm) 1 매